

래미안 원펜타스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[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]

-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해야하며, 미접수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
 - *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견본주택 접수가 가능하며, 해당 신청일 10:00~14:00 까지만 접수 가능.
-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(예비추천자 포함)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,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접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36 조 및 제 4 조 제 3 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[2024.7.19.(예정)] 현재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 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함
-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, 청약신청 및 동·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, 당첨일부터 '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'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
-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 특히 '신청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를 충분히 안내, 검증 받으시기 바람
-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「주택법」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단,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 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)이 부과될 수 있음
- 위장전입, 허위문서 제출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,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음
-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 64 조 및 「주택법시행령」 제 73 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(당첨자발표일)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됨. (단, 「주택법」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- 본 아파트는 현재 준공 승인(2024.6.7)된 후분양 아파트로서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고, 별도의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며, 당첨자 자격 확인 후 당첨 세대 방문 행사를 계획 중
-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[2024.7.19.(예정)]에 래미안 홈페이지(<https://www.raemian.co.kr>)에서 래미안 원펜타스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

1. 공급개요 및 주요일정(예정)

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공급위치 |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 번지 일대 | |
| 공급규모 | 아파트 지하 4 층, 지상 35 층 6 개동 총 641 세대 [조합 349 세대(임대 37 세대, 보류지 8 세대 포함)] 중 아파트 일반공급 292 세대 | |
| 주요 일정 (예정) | 입주자 모집공고 | 2024 년 7 월 19 일(금) 예정 |
| |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 | 2024 년 7 월 19 일(금) 예정 (https://www.raemian.co.kr) |
| | 특별공급 청약접수 | 2024 년 7 월 29 일(월) 예정 |
| | 당첨자 발표 | 2024 년 8 월 7 일(수) 예정 |
| | 계약체결 | 2024 년 8 월 19 일(월) ~ 8 월 21 일(수) |

※ 상기 주요일정은 사업추진 인·허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및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

2.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[중소기업근로자]

| 주택형 (청약신청 기준) | 약식 표기 | 일반분양 세대수 | 공급면적(m ²) | | |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|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|
| | | | 주거전용 | 주거공용 | 소계 | 대상자 | (예비추천자) | |
| 059.7832A | 59A | 5 | 59.7832 | 19.9788 | 79.7620 | - | - | |
| 059.8000B | 59B | 30 | 59.8000 | 19.8668 | 79.6668 | 1 | (5) | |
| 059.7940C | 59C | 2 | 59.7940 | 20.0282 | 79.8222 | - | - | |
| 084.7280A | 84A | 106 | 84.7280 | 25.9296 | 110.6576 | - | - | |
| 084.8077B | 84B | 55 | 84.8077 | 27.4171 | 112.2248 | 1 | (5) | |
| 084.7259C | 84C | 27 | 84.7259 | 26.4402 | 111.1661 | 1 | (5) | |
| 084.7442D | 84D | 27 | 84.7442 | 26.2532 | 110.9974 | - | - | |
| 소계 | | | | | | 3 | (15) | |

- ※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
- ※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의 '주택형'으로 청약하여야 하며, 동호수 배정은 각 '주택형' 별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입주자 선정 시 무작위로 결정되므로,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-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26 조의 2 제 1 항 및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(예비추천자)를 선정하며,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은 500%임
- ※ 예비입주자(예비추천자)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

3.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■ 신청자격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36 조 제 8 호 중 제 35 조 제 1 항 제 23 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[2024.7.19.(예정)] 현재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신 분

•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통장 가입요건

-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
-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
-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m²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신 분
- 청약예치 기준금액

| 구 분 |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| 그 밖의 광역시 |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전용면적 85 m ² 이하 | 300 만원 | 250 만원 | 200 만원 |

※ '지역' 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

※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의3호, 제2조 제4호에 의거 '세대' 및 '무주택 세대구성원'의 정의가 변경되었음

- “세대”란,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“세대원”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- 가. 주택공급신청자
 -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 -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. (예) 부·모, 장인·장모, 시부·시모, 외조부·외조모 등
 -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. (예) 아들·딸, 사위·며느리, 손자·손녀, 외손자·외손녀 등
 -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: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. (예) 전혼자녀 등
-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,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.

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- 입주자모집공고일[2024.7.19.(예정)]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
-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(특별공급은 1세대 1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임)
-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

■ 당첨자 선정방법

-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우선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.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(예비추천자 포함)로 선정된 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[2024.7.29.(예정)]에 반드시 청약접수 하여야 하며,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
-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, 동·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·호수를 결정함
-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예비추천자 및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

4. 기타 유의사항

-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,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시책,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 본인의 사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본 주택은 준공 후 분양하는 아파트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입주 시 잔금대출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야 함
-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,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. 단, 본인이 동일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(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)
-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,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하며 부부의 경우 청약접수가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봄
- 공급금액, 재당첨제한, 전매제한, 공급대상 주택형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
- 신청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사이버건본주택, 인쇄제작물 및 래미안 홈페이지(<https://www.raemian.co.kr>)에서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
- 기타 청약관련 문의사항은 ‘래미안 원웬타스’ 대표번호(02-401-330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

5. 분양사무실 안내



- 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7 래미안갤러리 1층
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사무실
- 대중교통(지하철) 이용시: 장지역(8호선) 4번출구
약 700m
- 대표번호: 02)401-3301

6. 위치도 및 조감도



※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